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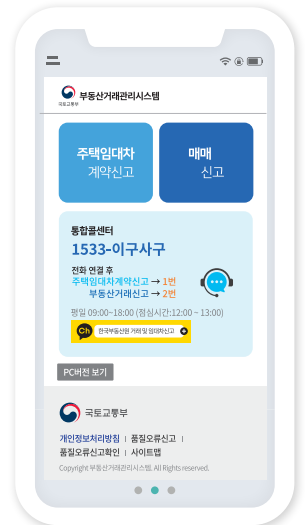
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선택이 아닌 필수

'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실시



임대차신고제란?

신고 의무인	임대인+임차인(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신고) ※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
신고대상 ① ~ ③ 모두 해당될 경우	① '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② 수도권(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 및 경기도), 광역시,도(군 단위 제외), 세종특별자치시, 제주특별자치도 ③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
신고서류	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, 주택 임대차 계약서(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)
신고방법	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https://rtms.molit.go.kr) 온라인 신고(모바일 가능) ※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자동제출
제재사항	신고 의무 위반 시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(단, 거짓신고는 100만원)



▲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

지연신고 및 거짓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

계약금액	신고 지연기간					거짓 신고
	3개월 이하	6개월 이하	1년 이하	2년 이하	2년 초과	
1억원 미만	2만원	4만원	6만원	8만원	10만원	100만원
1~3억원	3만원	8만원	10만원	13만원	15만원	
3~5억원	4만원	12만원	16만원	20만원	25만원	
5억원 이상	5만원	15만원	20만원	25만원	30만원	

☑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건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☎ 1533-2949

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<http://rtms.molit.go.kr>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민원지적과로 문의
(032-760-7379)

